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제1996호
- 다. 제출일자: 2020. 10. 16.
- 라. 회부일자: 2020. 10. 26.

### 2. 제 안 사 유

- 서울특별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임기가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되어 있어 기후환경 본부 특성에 따른 계속사업의 추진 및 위원 위촉 시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연임횟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 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 7. 30.~8.19.)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위')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재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위촉위원의 임기를 6년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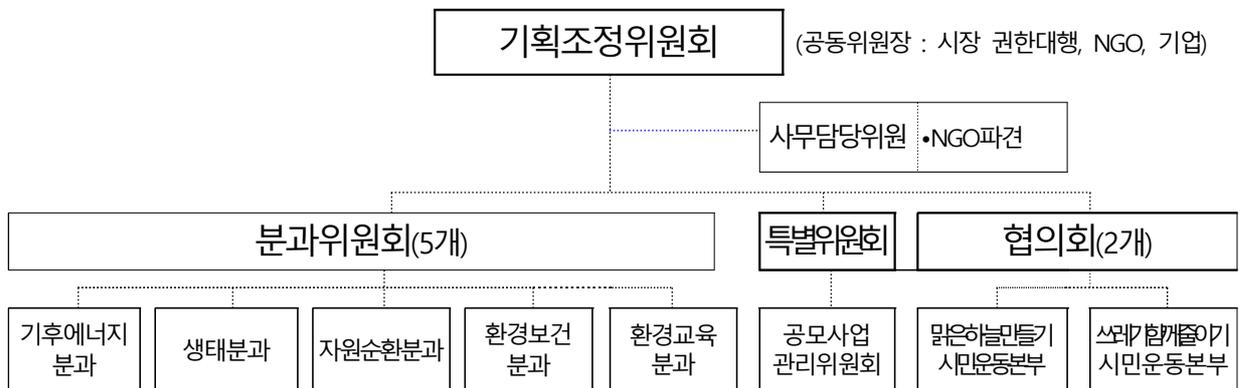
### 나. 검토의견

-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지구환경 보전을 목표로, 서울시민과 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하여 협치 체계 마련과 정책 개선 등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1995년에 최초로 설치되었음.

동 위원회는 현재 3인의 공동위원장을 비롯하여 기획조정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 1개 특별위원회 및 2개 협의회에 당연직 6인과 위촉직 94인 등 총 10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조직도 및 위원 구성 현황>

- ▶ 위촉직: 시의원(5), 시민단체(30), 지역.시민(7), 전문가(24), 기업(16), 언론.법조(7), 청년(5)
- ▶ 당연직: 시장, 기후환경본부장, 시민건강국장, 물순환안전국장, 푸른도시국장, 한강사업본부장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제8조제3항에서는 위원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sup>1)</sup>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018년(2년, 1회 연임)<sup>2)</sup>과 2019년(2년, 2회 연임)<sup>3)</sup> 조례 개정을 통해 각각 4년과 6년으로 변경된 바 있음. 다만, 부칙에 시행일을 2018년의 경우 약 1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2019년 2월 1일부터로, 2019년의 경우 공포한 날(2019년 1월 3일)부로 규정함에 따라 현재 2018년 조례 개정 사항이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2019년 조례 개정이 효력을 상실), 이로 인해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여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녹색위 위촉위원 임기 및 연임 관련 조례 개정 현황〉

~2018.1.4.	⇒	<b>2018. 1. 4. 개정</b> (현재 발효 중)	⇒	<b>2019. 1. 3. 개정</b> (효력 상실)
임기 2년		임기 2년, 1회 연임 (시행일: 2019년 2월 1일)		임기 2년, 2회 연임 (시행일: 공포일(2019년 1월 3일))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개정 시 부칙 시행일의 오류를 바로 잡아 위촉위원의 임기를 6년(두 차례 연임)까지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은 없음.

1) 동 규정은 2016년 7월 14일에 신설되었음.

2)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 2019. 2. 1.][서울특별시조례 제6744호, 2018. 1. 4., 일부개정]

3)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 2019. 1. 3.][서울특별시조례 제6985호, 2019. 1. 3., 일부개정]